

부속서 III

니카라과의 유보목록

주해

1. 부속서 III의 니카라과 유보목록은 다음을 규정한다.
 - 가. 나호 1목부터 5목까지에 기술된 의무에 대한 니카라과의 약속을 제한하거나 명확히 하는 두주
 - 나. 제1절에서는, 제11.9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니카라과의 기준의 조치
 - 1) 제11.2조(내국민 대우)
 - 2) 제11.3조(최혜국 대우)
 - 3) 제11.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
 - 4) 제11.5조(국경 간 무역), 또는
 - 5) 제11.8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2. 제1절의 각 유보항목은 다음의 요소를 규정한다.
 - 가. **분야**는 유보된 일반 분야를 지칭한다.
 - 나. **하위분야**는 유보된 특정 분야를 지칭한다.
 - 다. **관련의무**는 제11.9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기재된 조치(들)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1항나호에서 언급된 의무(들)를 명시한다.
 - 라. **정부수준**은 열거된 조치(들)를 유지하는 정부수준을 나타낸다.
 - 마. **조치**는 유보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적시한다. 조치 요소에 인용된 조치는
 - 1) 이 협정의 발효일에 개정, 지속 또는 개신된 대로의 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 2) 그 조치의 권한에 따라, 그리고 이에 합치되게,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모든 하위조치를 포함한다.
 - 바. **유보내용**은 조치에 대한 일반적이며 비구속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3. 제1절의 비합치 조치의 해석에서, 비합치 조치 유보항목의 모든 요소가 고려된다. 비합치 조치는 그 비합치 조치가 취해지는 금융서비스 장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해석된다.

- 가. 조치 요소가 유보내용 요소의 자유화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 또는 해당하는 경우 금융서비스 장 부속서의 구체적 약속에 의하여 한정되는 한도에서, 그와 같이 한정된 조치 요소는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리고
- 나. 조치 요소가 그렇게 한정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조치 요소와 종합적으로 고려된 그 밖의 요소 간의 불일치가 실질적이고 중대하여 조치 요소가 우선한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가 아니면,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렇게 결론 내리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불일치의 한도에서 그 밖의 요소가 우선한다.

4. 니카라과가 자국의 영역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서비스 공급자가 시민권자 일 것을 요구하는 조치를 유지하는 경우, 제11.2조(내국민 대우), 제11.3조(최혜국 대우), 제11.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 또는 제11.5조(국경 간 무역)와 관련하여 부속서 III에서 취하여 진 조치에 대한 유보항목은 그 조치의 한도에서 제9.3조(내국민 대우), 제9.4조(최혜국 대우) 및 제9.9조(이행요건)에 대한 비합치 조치로 작용한다.

두주

1. 이 협정상의 이러한 하위분야의 약속은 이 두주 및 아래의 제1절에 규정된 제한 및 조건에 따라 수행된다.
2. 제11.4조에 대한 니카라과의 약속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서비스를 공급하고 니카라과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법적 형태에 대한 비차별적 제한의 적용대상이 된다.¹
3. 제11.2조(내국민 대우) 및 제11.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에 따른 니카라과의 약속은, 외국인 투자자가 니카라과에서 금융기관을 설립하거나 이에 대한 지배지분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본국에서 동일한 금융서비스의 하위분야에서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금융기관을 소유하거나 지배하여야 한다는 제한을 조건으로 한다.
4. 니카라과는 제11.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에 대하여 제11.9조제1항다호(비합치조치)에 따른 자국의 약속을 다음의 방식으로 제한한다: 제11.9조제1항다호는 제11.4조제1항가호에 관한 비합치 조치에만 적용되며, 제11.4조제1항나호에 관한 비합치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²

¹ 예를 들면, 파트너십 및 단독소유기업은 일반적으로 니카라과에서 예금금융기관에 대한 법적 형태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두주는 그 자체로 다른 쪽 당사국 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자회사 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거나 달리 제한하는 것을 의도하지 아니한다.

² 상기 제4항에 명시된 제11.9조제1항다호의 적용상의 제한과 관련하여, 제11.3조(최혜국 대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절

1.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2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률 제561호, 은행, 비은행 금융기관 및 금융단체에 관한 일반법 (이하 “은행법”이라 한다)(Ley No. 561, Ley General de Bancos, Instituciones Financieras no Bancarias y Grupos Financieros), 관보 제232호 (2005.11.30)</p> <p>결의안 제CD-SIBOIF-473-1-ABR11-2007호, 은행, 금융회사, 외국은행 지점 및 대표사무소 설립요건에 관한 기준(Resolución N° CD-SIBOIF-473-1-ABR11-2007, Norma Sobre Los Requisitos para la constitución de Bancos, Sociedades Financieras, Sucursales de Bancos Extranjeros y Oficinas de Representación) (Norma de Constitución)</p> <p>법률 제551호, 예금보증제도법(Ley No. 551, Ley del Sistema de Garantías de Depósito), 관보 제168호(2005.8.30) 및 그 개정</p> <p>법률 제587호, 자본시장법(Ley No. 587, Ley de Mercado de Capitales), 관보 제222호(2006.11.15)</p> <p>법률 제899호, 투자회사법(Ley No. 899, Ley de Sociedades de Inversión), 관보 제76호(2015.4.27)</p>
유보내용	<p>은행 업무는 회사로 설립되고 니카라과에 주소지를 둔 법적 실체, 또는 이러한 목적으로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은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된 은행지점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 법률 제561호, 「은행법」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9조</p> <p>외국은행이 니카라과 내 당행 지점에 할당한 자본금은 니카라과 기관에 대하여 요구되는 최소기준을 충족시키며 실제로 지급되고 니카라과에 유입된다. 법률 제561호, 「은행법」 제17조 및 「헌법규칙」 (Norma de Constitución) 제11조가호</p> <p>외국은행 지점은 니카라과 내 지점에 할당된 자본금 및 준비금을 공표하거나 명시하지 아니하고 모회사의 자본금 및 준비금을 공표하거나 명시할 수 없다. 법률 제561호, 「은행법」 제18조</p> <p>니카라과에 설립된 외국은행 지점의 행정 및 법률대리는 적법한 승인을 받고 니카라과에 거주하는 행정가 및 관리자가 담당할 것이다. 법률 제561호, 「은행법」 제32조</p> <p>니카라과에서 수행되는 사업에 관하여, 외국은행 지점의 법적 주소지는 니카라과이다. 법률 제561호, 「은행법」 제13조</p>

	<p>해외에서 설립되어 니카라과에 지점을 개설하는 은행은 니카라과 내 자신의 지점 운영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외교적 채널을 이용할 수 없다. 법률 제561호, 「은행법」 제13조</p> <p>니카라과에 설립된 외국은행 지점의 자본금이 있는 경우, 그 자본금은 사업의 청산이 완료된 경우라면 은행감독원장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정하여 해외로 송금될 수 있다. 법률 제561호, 「은행법」 제26조</p> <p>니카라과에 지점을 보유한 외국은행이 국내법에 따라 청산되는 경우, 그러한 지점 역시 청산될 것이다. 「예금보증제도법」 제77조</p> <p>외국은행의 지점 개설 신청은 양 당사국의 감독기관 간에 기관정보가 교환될 수 있고 모은행이 인가를 받은 국가에서 5년을 초과하여 운영되었으며 금융은행중개 업무를 이행한 경우에 한정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합병으로 시작된 외국은행의 경우, 가장 오래된 실체의 운영연수가 운영연수로 계산될 것이다. 「헌법규칙」 (Norma de Constitución) 제8조. 외국은행의 대표 사무소는 대출 및 투자 형태로 니카라과 내에 자금을 둘 수 있으며 고객을 위한 정보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니카라과의 공중으로부터 예치금을 수령하는 것은 금지된다. 법률 제561호, 「은행법」 제14조</p> <p>주식시장의 경우, 주식중개인이 되기 위해서는 니카라과인 또는 니카라과에 거주하는 외국인일 것이 요구되며, 스페인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필요가 있다. 법률 제587호, 「자본시장법」 제69조</p> <p>외국 국민이 외부감사를 이행하고 은행감독원의 관리하에 있는 모든 실체는, 공인회계사를 통하여 등록을 포함한 니카라과 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p>
--	--

2.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비은행 금융기관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 금융회사, 신용카드 발행회사, 보세창고, 증권거래소, 증개회사, 투자자금 관리회사, 증권화 펀드관리회사, 증권중앙예탁기관, 청산 및 결제기관, 전자화폐를 운영하는 기업 및 특별제도를 채택한 금융기관(보험 제외)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2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률 제561호, 은행, 비은행 금융기관 및 금융그룹에 관한 일반법 (Ley No. 561, Ley General de Bancos, Instituciones Financieras no Bancarias y Grupos Financieros), 관보 제232호(2005.11.30)(은행법)</p> <p>법률 제515호, 신용카드 사용 촉진 및 규제에 관한 법(Ley No. 515, Ley de Promoción y Ordenamiento del uso de la Tarjeta de Crédito), 관보 제11호(2005.1.17)</p> <p>결의안 제CD-SIBOIF-629-4-MAY26-2010호, 신용카드 운영 기준 (Resolución N° CD-SIBOIF-629-4-MAY26-2010, Norma para las Operaciones de Tarjetas de Crédito), 관보 제150호 및 제151호(2010.8.9 및 2010.8.10)</p> <p>법률 제587호, 자본시장법(Ley No. 587, Ley de Mercado de Capitales), 관보 제222호(2006.11.15)(자본시장법)</p> <p>결의안 제CD-SIBOIF-671-1-MAR30-2011호, 전자화폐로 운영하는 기업의 권한 및 운영에 관한 기준(Resolución N° CD-SIBOIF-671-1-MAR30-2011, Norma para la Autorización y Funcionamiento de Entidades que operan con Dinero Electrónico)(전자화폐 기업 기준), 관보 제79호 및 제81호(2011.5.3 및 2011.5.5)</p> <p>법률 제734호, 일반예탁창고법(Ley No. 734, Ley de Almacenes Generales de Depósitos), 관보 제201호 및 제202호(2010.10.21 및 2010.10.22)(창고법)</p>
유보내용	<p>금융기관(「은행법」 제4편), 일반 보세창고(법률 제734호 제7조 및 제13조, 「창고법」), 증권거래소(「자본시장법」 제36조), 증개회사(「자본시장법」 제63조), 투자자금 관리회사(「자본시장법」 제74조), 증권화 펀드관리회사(「자본시장법」 제122조), 중앙증권예탁기관(「자본시장법」 제139조), 청산 및 결제기관(「자본시장법」 제154조), 전자화폐로 운영되는 기업(「전자화폐 기업 기준」) 및 특별제도를 채택한 금융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면, 해당 규제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하고 니카라과에서 법인으로 설립되거나 적법하게 해외에서 설립된 법인의 지점으로 설립되어야 한다.</p> <p>외국에 설립된 비은행 금융기관이 니카라과 지점에 할당하는 자본금은 실제로 지급되고 니카라과에서 송금되어야 한다. 예금의</p>

	<p>형태로 공공자원을 확보하는 이러한 비은행 금융기관의 지점은 모기업의 자본금 및 준비금을 기준으로 대출을 이행할 수 없다.</p> <p>비은행 금융기관이 은행 하위분야에 규정된 동일한 규정의 적용 을 받는 경우, 조치에 기재된 법을 참조한다.</p>
--	---

3.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보험
관련의무	국경 간 무역(제11.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8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률 제733호, 보험, 재보험 및 채권 일반법(Ley No. 733, Ley General de seguros reaseguros y fianzas), 관보 제162호, 제163호 및 제164호 (2010.8.25, 2010.8.26 및 2010.8.27)</p> <p>결의안 제SIB-OIF-IV-26-96호, 보험중개 및 중개기능 행사 허가에 관한 규제 규칙(Resolución: SIB-OIF-IV-26-96, Normas Regulatorias para la autorización de intermediarios de Seguros y el ejercicio de sus funciones de intermediación), 관보 제13호(1997.1.20)</p>
유보내용	<p>보험 및 재보험 업무는 회사로 설립되고 니카라과에 거주지를 두고 있으며, 관련 규제기관이 승인한 법적 실체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 「보험법」 제9조</p> <p>해외에서 적법하게 설립된 보험사(보험, 재보험, 보증 및 재통합)는 지점을 설립하여 니카라과에서도 운영될 수 있다. 「보험법」 제20조</p> <p>해외에서 설립되어 니카라과에 지점을 설치한 보험사는 모든 법적 효력상 니카라과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간주된다. 「보험법」 제24조</p> <p>니카라과에서 수행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 보험사 지점의 주소지는 니카라과가 될 것이고, 그들은 니카라과 공화국에 설립된 법률 대리인, 변호사 또는 대리인으로 간주된다. 「보험법」 제24조</p> <p>해외에서 설립되어 니카라과에 지점을 설치한 보험사는 니카라과에서의 운영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외교채널을 이용할 수 없다. 「보험법」 제24조</p> <p>니카라과에 주소지를 둔 자연인 또는 법인은 수출 및 수입 운송 또는 니카라과 밖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손해에 대한 보험인 경우, 그리고 문제가 되는 특정 보험이 니카라과에서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승인된 기관이 입증한 경우, 또는 이러한 기관이 그러한 위험에 적용되는 승인된 보험상품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니카라과에서의 운용을 위하여 적절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보험을 구입하는 것이 금지된다. 「보험법」 제174조</p> <p>니카라과에서 보험중개에 종사하거나 보험대리인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니카라과에 거주하여야 하고 노동허가를 보유하여야 하며 법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험법」 제115조</p>

4.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보험을 제외한 모든 하위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1.4조) 국경 간 무역(제11.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유보내용	니카라과는 니카라과 내에서 은행 또는 보험사로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을 제외하고, 외국 법에 따라 조직된 금융기관의 니카라과 내 설립을 요구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5.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보험을 제외한 모든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2조) 국경 간 무역(제11.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유보내용	<p>니카라과는 금융기관에게, 또는 농업생산 금융, 저소득층 대상 주택 대출 및 중소기업 대출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국가가 지분의 전부 또는 다수를 소유한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공적 기관에게 혜택을 부여할 권리를 유보한다.</p> <p>그러한 혜택은 상업적 경쟁사의 핵심 운영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아니하며,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정부보증의 연장, 면세, 통상적인 법적 형태 요건 및 운영 개시를 위한 법적 요건에 대한 예외.</p>